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98

2022. 3. 25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3월 08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3월 16일

-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종구 경제통상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지식재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○ 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변경(안 제10조제3항, 제8항)

- (위원장) 행정부지사 → 경제부지사
- (간 사) 미래산업과장 → 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

3. 검토의견 (김경희 수석전문위원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,

○ 제10조3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, 같은 조 8항 중 “미래산업과장”을 “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”으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음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미래산업과장”을 “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적용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지식재산위원회) ①·②(생 략)	제10조(지식재산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③ ------ 경제부지사--------..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 된다.	⑧ ----------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-----.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3조(적용)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제13조·제14조 (생 략)	제14조·제15조 (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.

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다만,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
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
3. 정부, 국회, 언론,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**경제통상국**, 신성장산업국,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, 바이오산업국, 균형건설국, 환경산림국 **소관 업무**, 공항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
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제10조(경제통상국에 두는 과) ① ~ ② (생략)

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25. (생략)

26. 지식재산권 육성·지원

27. ~ 30. (생략)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**첨부제외 관련규정**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○ **사 유**

- 본 개정조례안은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지식재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○ **작성자**

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정 선 미